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의·장

제 52 호                      2015. 5.28(목)

## 공 고

-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1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8
-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18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 - 684호**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남 원 시 장****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남원시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별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

- 우편번호 : 590-080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78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834),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사업소 지원담당(☎063-620-89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 1. 개정이유

남원시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별표)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기간 : 2015. 5. . ~ 2015. 6. . (20일간)
  - 결과 :
- 나. 비용추계서: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시설사업소(이하 “시설사업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을 “남원시 시설사업소의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시설사업소”를 “남원시 시설사업소”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항은 이를”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어현동 37-111번지”를 “양림길 12”로 한다.

- ②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노암동 1-1번지”를 “양림길 48-63”으로 한다.

[별표]

## 관리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시설물 명칭	위 치
광 한 루 원	남원시 요천로 1447
관 광 지	남원시 양림길 17
음 악 분 수 대	남원시 양림길 12
야 외 무 대	남원시 양림길 12
춘 향 문 화 예 술 회 관	남원시 양림길 43
춘 향 멀 티 프 라 자	남원시 양림길 43
춘 향 테 마 파 크	남원시 양림길 14-9
향 토 박 물 관	남원시 양림길 14-9
승 월 교 무 지 개 분 수	남원시 노암동 807-1
교 룡 산 국 민 관 광 지	남원시 산성순환길 714
남 원 향 공 우 주 천 문 대	남원시 양림길 48-63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 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남원시 공고 제2015 - 685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춘향테마파크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안 별표 1)

##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할인(연계)
어 른	2,500	2,000	2,500	2,000	1,300
청소년/군인	1,500	1,000	1,500	1,000	600
어린이	1,000	500	1,000	500	400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

- 우편번호 : 590-080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447(천거동 78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834),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사업소 지원담당(☎063-620-89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 1. 개정이유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춘향테마파크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안 별표 1)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할인(연계)
어 른	2,500	2,000	2,500	2,000	1,300
청소년/군인	1,500	1,000	1,500	1,000	600
어린이	1,000	500	1,000	500	400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 ~ 2015. 6.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중 ““단체” : 단체라 함은 30인이상 동일”을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입장료”란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관람요금)”을 “(입장요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불하고 입장권을 구입하여 공원사업소 직원이 이를”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며, 시설사업소 직원이”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시설사업소장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표”로, “볼 수 있”을 “보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분하여 시장이 조정·운영한다.

제8조의 제목“(입장료의 면제)”를“(입장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한다”를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자를 동반한”을 “보호자와 함께 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얻어”를 “받아”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65세 이상인 사람

제8조 제1항제9호 중 “제1급 내지 제3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로, “동행하는 자”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제7조에 규정된”을 “제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

취하여”를 “잘라”로, “잔여분(문화재사진 등 부분)은”을 “나머지(문화재사진 등 부분)는”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시설을 할”을 “시설을 경내에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광한루원”을 “시장은 광한루원”으로,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을 “차량은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 운영권을 사회단체에 위탁징수케 할”을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 1년 이내”를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를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로 한다.

제13조 중 “사용하고자 할”을 “사용하려 할”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시장은 다음 각 호”로, “경내사용을 금한다”를 “경내 사용을 금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흥행·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공연

제14조 제2호 중 “정치, 시위 성토”를 “정치, 시위, 성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판매, 구걸 행상”을 “판매, 구걸, 행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용 행위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퇴장) 시장은 광한루원에 입장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장

시킬 수 있다.

- 1. 삭 제
- 2. 삭 제
- 3. 영조물이나 그 밖에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류·어류를 포획하는 사람
- 4.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사람
- 5.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6.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16조 중 “사용자로서”를 “사용자로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2,500	1,500	1,000
단 체	2,000	1,000	500
할인(연계)	1,300	600	400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춘향·이도령 캐릭터』</p>  <p><u>광 한 루 원</u>  <a href="http://www.gwanghallu.or.kr">www.gwanghallu.or.kr</a></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광한루원 안내도』</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사업소 (590-080)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Tel 063-625-4861 fax 063-620-6834</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남 원 광 한 루(보물 제28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li> <li>○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li> <li>○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li> <li>○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li> <li>○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li> <li>○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li> </ul> <p>관람시간 : 08:00~20:00</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gwanghallu.or.kr">www.gwanghallu.or.kr</a></p>
---	---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5 - 686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안 별표 1)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할인(연계)
어 른	3,000	2,500	3,000	2,500	1,800
청소년/군인	2,500	2,000	2,500	2,000	1,600
어린이	2,000	1,500	2,000	1,500	1,400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

- 우편번호 : 590-080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447(천거동 78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834),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사업소 지원담당(☎063-620-89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 1. 개정이유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안 별표 1)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할인(연계)
어 른	3,000	2,500	3,000	2,500	1,800
청소년/군인	2,500	2,000	2,500	2,000	1,600
어린이	2,000	1,500	2,000	1,500	1,400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 ~ 2015. 6.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려될 때”를 “우려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분하여 시장이 조정·운영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중 “개장시간에 한”을 “개장시간에 한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제8조 제1항제7호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동행하는 자”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

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

시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입장료는 이를”을 “입장료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볼 수 있”을 “보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기본법에 의해”를 “「교육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는 이를”을 “사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원상복구하되 그 비용일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을 “사람은 퇴장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어류”를 “조류·어류”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입한 자”를 “반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피해를 주는 자”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21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2조 중 “이외”를 “외”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500	2,000
단 체	2,500	2,000	1,500
할인(연계)	1,800	1,600	1,400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춘향테마파크 <a href="http://www.namwontheme.or.kr">www.namwontheme.or.kr</a>	<u>남원항공우주천문대 사진</u>
· 본 관련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본 관련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90-100) 전북 남원시 양림길 14-9(아현동) 춘향테마파크 Tel 063-633-6912 천문대 063-620-6900 <a href="http://www.namwontheme.or.kr">www.namwontheme.or.kr</a>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사          욕 춘향테마파크          신청서 사용변경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용내역 (변경내역)	사용시설 (변경시설)		
	사용일시 (변경일시)		
	사용목적		
기타(시설 추가 설치 등)			
<p>「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b>남 원 시 장 귀하</b></p>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 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